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0-23-108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년 4월 29일

주 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할 것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할 것

마.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바.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사.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할 것

3.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Ⅰ. 기초 사실

1　　(이하 참고4에서 '피심인'이라 한다)는　　서비스 등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참고4에서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19.7.3.기준)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년 평균
전체 매출					
관련 매출					
관련 없는 매출*					

※ 자료 출처 : 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 판매매출 등은 관련 없는 매출로 분류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KISA)에 유출신고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2019. 7. 3. ~ 4.)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현황

3 피심인은 서비스( )를 운영하면서 2019.7.4.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 ·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이용자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평문),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건
총 계			건

나. 유출 규모 및 항목

4 미상의 해커(이하 참고4에서 '이 사건 해커'라 한다)는 2019. 5. 9. 17:44 피심인의 ( ) 서비스 고객정보 262건과 함께 0.15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메일을 발송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 비밀번호(평문),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 7개 항목이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 >

구분	유 출 항 목	건 수
서비스 고객	아이디, 비밀번호(평문),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	262건

<이 사건 해커가 피심인에게 보낸 협박 메일 내용>

다. 유출 경위

5 이 사건의 해커는 2019. 4. 29. 11:30 피심인의 웹서버 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소스( )에 저장되어 있던 그룹웨어 관리자 계정(ID : " ", PW: " ")과 통합DB관리자 계정(ID : " ", PW: " ")을 탈취하였고, 2019. 4. 29. 11:38 탈취한 계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019. 5. 9.	17:44	이 사건의 해커(IP: 157.52.138. (US), 125.35.24 (CN))로부터 피심인의 서비스 고객정보 262건이 담긴 메일을 수신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20:13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21:00경	외부에 오픈된 관련 포트를 차단
2019. 5.10.	17:00	이용자 대상 **이메일 통지**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공개}

6 피심인은 VPN 설치 등을 위해 등 8개사(, , , , , ,)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처리 위탁하고 있으나 2019. 7. 4. 현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일부(2019.7.4. 기준)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7 **(접근권한 기록보관)**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그룹웨어)을 부터 구축·운영 하고 있으나 2019. 7. 4. 현재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그룹웨어 최고 관리자(system) 계정 최초 생성 시점

8 **(안전한 인증수단)** 피심인은 2019. 7. 4. 현재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그룹웨어,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시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외부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

9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운영)** 피심인은 웹서버(203.239.130.)에 대해 방화벽(CISCO ASA5510)과 침입탐지 시스템(NIDS)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인가받지 않은 접근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외부 인터넷망에서 접속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10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서비스 관리자페이지의 qna 답글 쓰기 관리자(ID : " ")의 비밀번호를 " "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 ' ' 파일에 저장 된 관리자 ID/PW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11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접속기록을 2개월간 보관하고 있었으나, 접속자,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지 않았고, 월1회 이상 확인·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

12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DB에 저장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 한 사실이 있다.

<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DB저장함 >

마.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악성프로그램 방지}

13 피심인은 2009. 9. 25. 이후로 공식적인 배포가 중단되어 보안업데이트를 지

원하지 않는 제로보드 4버전(게시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그룹웨어, 서비스 관리자페이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 11. 9. 보안공지를 통해 해당 버전 사용자는 XE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보안업데이트를 지원하는 타 웹 게시판 솔루션으로 교체 권고한 사실이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공지 2012.1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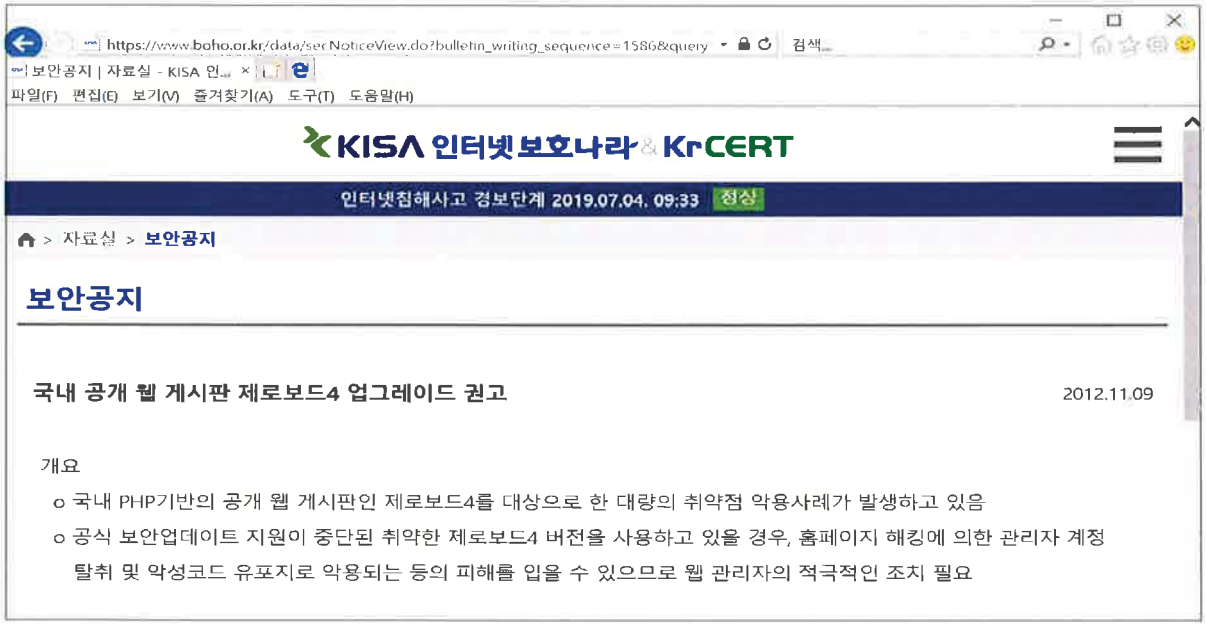

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14 피심인은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6,114건을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15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8. 19.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8. 29.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제1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제2호)'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7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법 제2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폐기 등)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①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는 자(수탁자)와 ②개인정보취급위탁의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18 또한 "법 제25조제2항에 대해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시행령 제10조)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위탁에 대해서는 ①누구에게 ②왜 주는지에 대해서 이용자가 알도록 조치하면 되고,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제5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제4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제1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제6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 고시 제4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제1호)',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

지 않는 것을 권고(제2호)',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제3호)'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020.1.2. 시행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에서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도록 개정됨

23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에는 신청자 정보, 신청 및 적용 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인증과 더불어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인가되지 않은 자가 사용자계정 탈취, 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말함) 및 침해사고(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의 충족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위협 대응 및 정책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관리, 이상 행위 대응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4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2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ⅰ)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ⅱ)접속일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 〈년-월-일, 시:분:초〉, ⅲ)접속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ⅳ)수행업무(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6 고시 제6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

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및 이용자 등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평문형태가 아닌 해쉬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 값으로 시스템에 저장(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7 고시 제7조제2호에 대해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OS) 보안 취약점 등을 악용하는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공개}

29 피심인이 VPN 설치 등을 위해 [redacted] 등 8개사 [redacted] 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처리위탁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내용 및 수탁자등을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30 **(접근권한 기록보관)**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부여 및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31 **(안전한 인증수단)** 피심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ex.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3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운영)**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인가받지 않은 접근에 대한 제한조치를 하지 않아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33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적용)**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지 않고 이를 적용·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5조제2항제4호, 고시 제4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34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업무 등)을 월1회 이상 확인·감독하지 않고, 그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

35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DB에 저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마.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악성프로그램 방지}

36 피심인이 2009. 9. 25. 이후로 공식적인 배포가 중단되어 보안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제로보드 4버전(게시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 중인 스마트

에디터(2.0)의 제조사(네이버)가 자사의 스마트에디터 파일 업로드 부분이 웹쉘 공격이나 홈페이지 변조 등에 취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를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지만 피심인이 이를 즉시 업데이트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고시 제7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처리위탁 공개	§25②3호	§10	개인정보 처리위탁사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음
	접근통제	§28①2호	§15②1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③)
	접근통제	§28①2호	§15②1호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패스워드만을 이용토록 하여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④)
	접근통제	§28①2호	§15②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⑤)
	접근통제	§28①2호	§15②4호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운영하지 않은 행위(고시§4⑧)
	접속기록	§28①3호	§15③1호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감독하지 않고,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고시§5①)
	암호화	§28①4호	§15④1호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DB에 저장한 행위 (고시§6①)
	악성프로그램방지	§28①5호	§15⑤	응용프로그램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고시§7)
	유효기간	§29②	§16②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2)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3)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할 것 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할 것 5)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6)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7)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할 것

다.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37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과태료 부과

38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제2항,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2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 제76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3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아. 법 제25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2항제1호	600	1,200	2,000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더. 법 제29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6조 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의 경우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 >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위반의 정도	가.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제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9 제2호 너목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이에 따라 조사 과정 중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5항 위반행위에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5②	600만원	없음	300만원	**300만원**
§28①2·3·4·5호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9②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1,8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42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18,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Ⅵ. 결론

43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제3호·제4호(과태료), 제76조제2항제1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4월 29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